

# 대학원 입학전형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대학원 학칙」 제2장에 의거 각 대학원의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 1 장 일반전형

제2조(지원자격) 각 대학원의 일반 학위과정인 석사학위과정,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일반전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
### 1.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

- 가. 국내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예정자
- 나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

### 2. 박사학위과정

- 가.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취득예정자
- 나. 기타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
- 다.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(전공)와 상이한 지원자는 대학원 해당 학과 책임교수의 승인을 받아 지원하여야 한다.

제3조(지원구비서류) 각 대학원의 일반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### 1. 석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

- 가. 입학지원서(소정양식) 1부
- 나. 대학졸업(예정)증명서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명서 1부
- 다.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
- 라.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(현역군인에 한함) 1부

### 2. 박사학위과정

- 가. 입학지원서(소정 양식) 1부
- 나. 석사학위(예정)증명서 1부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증명서 1부
- 다. 학사 및 석사과정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 1부
- 라. 연구계획서 1부
- 마. 국방부장관의 취학승인서(현역군인에 한함) 1부
- 바. 학과책임교수의 지원승인서[소정양식,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한 학과(전공)와 상이한 지원자에 한함] 1부

제4조(전형방법) 서류심사와 전공구술고사를 실시한다.

### 1. 서류심사

- 가. 대학 및 대학원 성적
- 나. 연구계획서(박사학위과정에 한함)

## 2. 전공구술고사

### 가. 전공지식

### 나. 학문에 대한 열정과 태도

제5조(전형위원 위촉 및 구성) ① 각 대학원장은 소속 대학원 각 학과의 강의담당 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을 위촉한다.

② 서류심사 및 전공구술고사의 전형위원은 학과책임교수를 포함하여 학과별로 각각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원은 그 특성에 따라 전형위원 구성을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6조(배점 및 합격기준) ① 배점 및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일반전형은 서류심사와 전공구술고사로 실시하며,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은 불합격으로 한다.

2. 서류심사와 전공구술고사의 배점은 해당학과에서 정할 수 있다.

②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1항의 합격 최저점수는 학과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의 경우, 각 대학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대학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대학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7조(합격의 결정 및 입학 취소) 대학원장은 학과별 입학정원과 지원자의 입학전형 성적을 대학원위원회에 부의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을 결정한다.

① 각 대학원장은 학과별 입학정원과 지원자의 입학전형 성적을 대학원위원회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)에 부의하여 사정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합격을 결정한다.

②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된 때는 각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제8조(신입생 등록 및 입학 확정)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확정된다.

## 제 2 장 특별전형

제9조(전형시기) 특별전형은 일반전형 이전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0조(선발인원) 선발인원은 모집 총 정원의 일정 범위이내로 한다.

제11조(지원자격) 각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특별전형 지원자격은 다음과 같다.

1. 석사학위과정 : 제2조제1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

2. 박사학위과정 : 제2조제2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해당 전공분야에서 상당한 경력 또는 연구 성과를 인정받은 사람

제12조(지원구비서류) 일반전형과 동일하 하되,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연구실적물 등을 추가할 수 있다.

제13조(전형방법)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하되, 서류심사에 전공경력, 연구실적 등의 항목을 추가

실시한다.

제14조(준용) 제2장 특별전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1장 일반전형 및 대학원위원회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은 각 대학원운영위원회)의 결정에 의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입학전형 시행에 관한 내규는 이를 폐지한다.

#### 부 칙

이 내규는 2008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내규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(국제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)의 입학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 따른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